투자위험등급 5등급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우리글로벌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외국집합투자기구인 "PIMCO GIS Total Return Bond Fund – INST Acc" 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90% 이상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적극적인 운용전략을 바탕으로 미국 국채, 모기지, 회사채 등 투자등급 중기채에 주로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외화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에 노출되어 장내외파생 상품을 이용하여 환헤지를 실행합니다. 투자에 신중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우리G PIMCO토탈리턴증권자투자신탁[채권_재간접형](H)**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G PIMCO토탈리턴증권자투자신탁[채권_재간접형](H)**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우리G PIMCO 토탈리턴증권자투자신탁[채권_재간접형](H)**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우리글로벌자산운용㈜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wooriglobalam.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2021년 06월 08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1년 06월 22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추가형(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 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www.wooriglobalam.com) 및 각 판매회사 본·지점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회사, 보험 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1.06.08)

우리G PIMCO토탈리턴증권자투자신탁[채권_재간접형](H)[펀드코드: 27470]

투자위험등급 5등급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우리글로벌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외국집합투자기구인 "PIMCO GIS Total Return Bond Fund – INST Acc" 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90% 이상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적극적인 운용전략을 바탕으로 미국 국채, 모기지, 회사채 등 투자등급 중기채에 주로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외화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에 노출되어 장내외파생 상품을 이용하여 환헤지를 실행합니다. 투자에 신중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우리G PIMCO토탈리턴증권자투자신탁[채권_재간접형](H)**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외국집합투자기구인 " PIMCO GIS Total Return Bond Fund-INST Acc " 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90% 이상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적극적인 운용전략을 바탕으로 미국 국채, 모기지, 회사채 등 투자등급 중기채에 주로 투자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_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집합투자업자	우리글로벌자산운용㈜ (☏ 02-2071-9900)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0.7%이내	**0.845**	0.600	1.03	204	344	492	809	1,752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35%이내	**0.545**	0.300	0.65	139	249	364	611	1,34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없음	**1.245**	1.000	1.40	175	358	551	965	2,19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1.045**	0.800	0.90	155	317	488	855	1,946
수수료미징구-퇴직연금(CP1)	없음	**0.595**	0.350	-	110	225	346	606	1,380
수수료미징구-개인연금(CP2)	없음	**1.225**	0.980	-	173	354	544	954	2,172
온라인슈퍼(S)	3년이내 환매금액의 0.15%이내	**0.495**	0.250	-	100	204	314	550	1,252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 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Class A와 Class C에 각가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8년, Class Ae와 Class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이 약 1.5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NAV)변동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주4)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6)동종유형 총보수 기준일: 2020년5월29일(유형:해외60재간접)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Class)	최초설정일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이후
		2019/06/22 ~ 2020/06/21	2018/06/22 ~ 2020/06/21	2017/06/22 ~ 2020/06/21	2015/06/22 ~ 2020/06/21	
운용	2010-06-22	7.03	6.37	3.52	3.57	4.13
비교지수		8.24	8.04	4.88	4.06	3.77
변동성		7.29	5.38	4.61	3.91	3.50

주1) 비교지수: Bloomberg Barclays U.S. Aggregate Index X 95% + Call X 5% 입니다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의 3. 집합 투자기구의 운용실적)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5)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인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 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6)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2021.06.08 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재간접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재유 (책임운용 전문인력)	84년생	과장	**9개**	**602억**	**18.78**	-	11.88	7.50	4년

▣ 이 투자신탁은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주1)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멀티에셋팀(공동운용)이 담당하며, "책임운용인력" 이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인력" 이란 책임운용인력이 아닌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운용현황은 멀티에셋팀(공동운용)이 담당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주2)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 보수가 약정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및 개수: 해당 사항 없음
주3)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5)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6)'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table>
<tr><td>투자자
유의사항</td><td>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d></tr>
<tr><td>주요투자위험</td><td>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table>
<tr><th>구 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
<tr><td>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td></tr>
<tr><td>시장위험 및 개별위험</td><td>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 및 정치환경, 환율변동 등 해외 경제지표의 변화 및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 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r><td>환율변동 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미국 국채, 모기지, 회사채 등 투자등급 중기채에 분산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투자함으로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 가격 표시통화는 미국달러(USD)이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내·외파생상품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표시통화인 미국달러에 대한 환헤지를 실행하며 목표환헤지 비율은 해외투자분 순자산가치(NAV)의 95%~105% 수준으로 환헤지 하는 것을 목표하여 환율변동위험의 최소화를 추구할 예정입니다.</td></tr>
<tr><td>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주식예탁증권 포함) 및 해외채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특정국가의 세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하여 투자신탁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td></tr>
</table>
※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d></tr>
</table>

<table>
<tr><td rowspan="2">매입방법</td><td>-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5시 이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td><td rowspan="2">환매
방법</td><td rowspan="2">-오후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D+8)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5시 이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D+5)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10영업일(D+9)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td></tr>
<tr><td>환매
수수료</td><td>해당사항 없음</td></tr>
<tr><td>기준가</td><td colspan="3">-산정방법: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wooriglobalam.com)・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td></tr>
<tr><td>과세</td><td colspan="3"><table><tr><th>구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 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table></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 colspan="3">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3">우리글로벌자산운용㈜ (☏ 02-2071-9900)</td></tr>
<tr><td>모집[판매]기간</td><td>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td><td>모집[매출]총액</td><td>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td></tr>
<tr><td>효력발생일</td><td>2021년 6월 22일</td><td>존속 기간</td><td>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3">각 판매회사의 본·지점(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wooriglobalam.com) 홈페이지 참고)</td></tr>
<tr><td>참조</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및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
기구의
종류</td><td colspan="3">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table><tr><th colspan="2">Class (종류)</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tr><td rowspan="2">판매
수수료</td><td>A
(수수료
선취)</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8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8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tr><td>C
(수수료
미징구)</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 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8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8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입니다.</td></tr><tr><td>판매
경로</td><td>E
(온라인)</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td></tr></table></td></tr>
</table>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S (온라인 슈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I (고액)	I1: 투자자의 자격을 투자금액이 50억원 – 100억원인 투자자에 한합니다. I2: 투자자의 자격을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투자자에 한합니다.
	F (기관)	투자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나.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따른 기금 다. 100억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W (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계좌 및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투자하는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
	P1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P2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wooriglobal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wooriglobalam.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wooriglobalam.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펀드코드
우리G PIMCO토탈리턴증권자투자신탁[채권_재간접형](H)	27470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	27471
A(E) (수수료선취-온라인형)	CJ820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	27472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	27475
C(I)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고액1)	27473
C(I)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고액2)	27474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랩)	27477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기관)	27476
P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퇴직연금)	97042
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개인연금)	AH656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AQ182
Pe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퇴직연금)	BT515
Pe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개인연금)	BT517
S(P)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CZ282
S(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D2756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 과"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용어에 관한 사항은「펀드 용어의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 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2) 모집(판매)예정금액 또는 예정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장소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wooriglobalam.com)홈페이지 참고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매입)의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펀드코드
우리G PIMCO토탈리턴증권자투자신탁[채권_재간접형](H)	27470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	27471
A(E) (수수료선취-온라인형)	CJ820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	27472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	27475
C(I)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고액1)	27473
C(I)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고액2)	27474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랩)	27477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기관)	27476
P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퇴직연금)	97042
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개인연금)	AH656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AQ182
Pe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퇴직연금)	BT515
Pe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개인연금)	BT517
S(P)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CZ282
S(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D2756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자	주요 내용
2010.06.21	- 최초설정
2010.11.01	- Class C(P) 신설,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2010.6.13)사항 반영
2011.03.16	- 책임운용전문인력의 변경(이정배→곽기영) - 피집합투자기구의 주요 운용 전략 및 위험 관리 부분 기재 사항 추가
2011.09.06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2012.05.17	- 환매수수료 변경: 2012년 8월 16일부터 환매청구시 환매수수료 없음 - 자본시장법 시행령(2011.11.05) 개정사항 반영
2012.09.26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및 자본시장법 (2012.06.29) 개정사항 반영
2013.04.18	- 퇴직연금 클래스 명칭 변경: C(P) → C(P)1 - 연금저축 전용인 C(P)2 클래스 추가
2013.08.01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2013.12.10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2013.8.29 시행) 개정사항 반영 - 피집합투자기구의 주요 운용 전략 일부 변경
2014.03.14	- 책임운용전문인력의 변경(곽기영→김정철), Class S신설
2014.10.02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2014.10.31	- 책임운용인력 변경(김정철→최재희) , 부책임운용인력변경(김한준→김은우)

2015.06.30	- 책임운용인력 변경(최재희 → 강세진) - 투자대상자산 추가(양도성예금증서 및 환매조건부 매수)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2016.04.11	- 집합투자규약 변경(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반영-유보가능 이익 조항 변경) - C(W) 가입 조건 변경("금전신탁" 추가)
2016.07.02	-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2016.08.17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2017.01.18	- 책임운용인력 변경(강세진→김백수) - 부책임운용인력변경(김은우→허익서)
2017.07.18	- 클래스 추가(Pe1, Pe2) - 클래스 명칭 변경 (C(P)1 → P1, C(P)2 → P2)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2017.12.26	- 집합투자업자 명칭 변경에 따른 펀드명, 홈페이지주소 변경 •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에이비엘글로벌자산운용 • 알리안츠 PIMCO 토탈리턴 증권 자투자신탁[채권_재간접형] → ABL PIMCO 토탈리턴 증권 자투자신탁[채권_재간접형](H) • www.allianzgi.co.kr→ www.ablgam.com
2018.03.28	- 책임운용인력 변경(김백수→박재홍)
2018.07.06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 투자위험등급의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 정기 갱신
2019.01.18	- 클래스 추가(A(E))
2019.05.21	- 책임운용인력 변경(박재홍→이연주) - 부책임운용인력변경(허익서→이다원)
2019.08.14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 투자위험등급의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 정기 갱신
2019.09.25	- 간이투자설명서 개정
2019.12.06	- 집합투자업자 명칭 변경에 따른 펀드명, 홈페이지주소 변경 • 에이비엘글로벌자산운용→우리글로벌자산운용 • ABL PIMCO토탈리턴증권자투자신탁[채권_재간접형](H) • → 우리G PIMCO토탈리턴증권자투자신탁[채권_재간접형](H) • www.ablgam.com → www.wooriglobalam.com
2020.01.21	- 부책임운용인력변경(이다원→이영노)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관련 내용 수정
2020.05.21	- 책임운용인력변경(이연주→이영노) - 부책임운용인력 삭제
2020.08.12	- 종류 S(P)1, S(P)2 수익증권 신설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2020.09.08	-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하나펀드서비스→우리펀드서비스)
2021.06.22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이영노→이재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기재)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 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ABL타워 ☏ 02-2071-9900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2021.06.08 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이재유 (책임운용 전문인력)	84년생	과장	**9개**	**602억**	고려대학교 언어학/경영학 학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융공학 석사 2019.7~현재 당사 글로벌투자본부 멀티에셋팀 2019.02~2019.07 대신자산운용 패시브솔루션본부 2016.12~2019.02 에이비엘글로벌자산운용 해외펀드팀 2013.02~2015.01 골드만삭스증권 오퍼레이션 2012.06~2013.01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오퍼레이션

성명	나이	직위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재간접형)(%)				운용 경력년수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이재유	84년생	책임운용전문인력 (과장)	18.78	-	11.88	7.50	4년
▣ 이 투자신탁은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주1)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멀티에셋팀(공동운용)이 담당하며, "책임운용인력" 이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인력" 이란 책임운용인력이 아닌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운용현황은 멀티에셋팀(공동운용)이 담당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주2)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 보수가 약정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및 개수 : 해당 사항 없음

주3)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5)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6)'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전문인력	성명	운 용 기 간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정배	최초설정일 ~ 2011.03.16

책임운용전문인력	곽기영	2011.03.16~2014.03.14
책임운용전문인력	김정철	2014.03.14 ~ 2014.10.31
책임운용전문인력	최재희	2014.10.31 ~ 2015.6.30
책임운용전문인력	강세진	2015. 6. 30 ~ 2017.01.18
책임운용전문인력	김백수	2017.01.18 ~ 2018.03.27
책임운용전문인력	박재홍	2018.03.28 ~ 2019.05.21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연주	2019.05.21 ~ 2020.05.20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영노	2020.05.21 ~ 2021.06.21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재유	2021.06.22 ~ 현재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김한준	2012.09.26~2014.10.31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김은우	2014.10.31 ~ 2017.01.18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허익서	2017.01.18 ~ 2019.05.21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이다원	2019.05.21 ~ 2020.01.21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이영노	2020.01.21~2020.05.20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2021.06.08 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이재유 (책임운용 전문인력)	84년생	과장	**9개**	**602억**	고려대학교 언어학/경영학 학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융공학 석사 2019.7~현재 당사 글로벌투자본부 멀티에셋팀 2019.02~2019.07 대신자산운용 패시브솔루션본부 2016.12~2019.02 에이비엘글로벌자산운용 해외펀드팀 2013.02~2015.01 골드만삭스증권 오퍼레이션 2012.06~2013.01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오퍼레이션
▣ 이 투자신탁은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주1)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멀티에셋팀(공동운용)이 담당하며, "책임운용인력" 이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인력" 이란 책임운용인력이 아닌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운용현황은 멀티에셋팀(공동운용)이 담당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주2)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 보수가 약정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및 개수 : 해당 사항 없음

주3)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전문인력	성명	운 용 기 간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정배	최초설정일 ~ 2011.03.16
책임운용전문인력	곽기영	2011.03.16~2014.03.14
책임운용전문인력	김정철	2014.03.14 ~ 2014.10.31
책임운용전문인력	최재희	2014.10.31 ~ 2015.6.30
책임운용전문인력	강세진	2015. 6. 30 ~ 2017.01.18
책임운용전문인력	김백수	2017.01.18 ~ 2018.03.27
책임운용전문인력	박재홍	2018.03.28 ~ 2019.05.21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연주	2019.05.21 ~ 2020.05.20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영노	2020.05.21 ~ 2021.06.21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재유	2021.06.22 ~ 현재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김한준	2012.09.26 ~ 2014.10.31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김은우	2014.10.31 ~ 2017.01.18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허익서	2017.01.18 ~ 2019.05.21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이다원	2019.05.21 ~ 2020.01.21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이영노	2020.01.21~ 2020.05.20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채권_재간접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①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이 투자신탁은 외국집합투자기구인 " PIMCO GIS Total Return Bond Fund-INST Acc "(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재간접형 모투자신탁에 90% 이상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재산의 대부분이 투자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인 " PIMCO GIS Total Return Bond Fund-INST Acc "는 미국 국채, 모기지, 회사채 등 투자등급 중기채에 주로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위험을 최소화하며서 총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운용전략을 수행합니다.

②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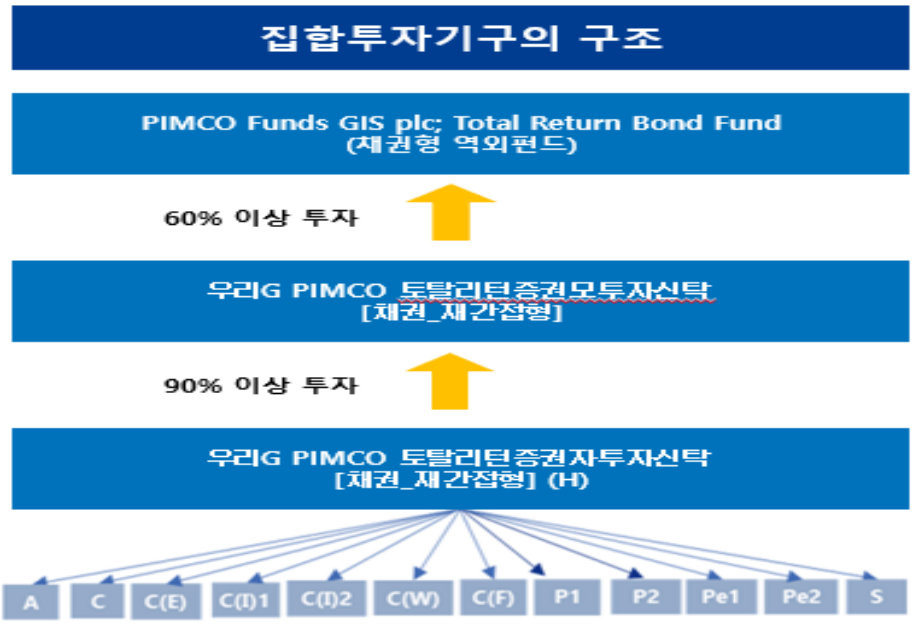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수료, 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하지만 종류의 수 및 구분에 관계 없이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일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운용행위는 종류간의 차별 없이 통합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클래스)	최초 설정일	가입자격	수수료(%)			보수(%)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
A	2010.06.29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0.7%이내	없음	없음	0.20%	0.60%	0.03%	0.015%
A(E)	-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고,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납입금액의 0.35%이내	없음	없음	0.20%	0.30%	0.03%	0.015%
C	2010.06.22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하지 않음	없음	없음	없음	0.20%	1.00%	0.03%	0.015%
C(E)	2010.07.15	투자자의 자격을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를 통하여 가입한 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없음	없음	없음	0.20%	0.80%	0.03%	0.015%
C(I)1	-	투자자의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부터 100억 미만인 경우	없음	없음	없음	0.20%	0.40%	0.03%	0.015%
C(I)2	-	투자자의 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없음	없음	없음	0.20%	0.20%	0.03%	0.015%

		경우							
C(W)	2010.07.09	판매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 금전신탁의 경우	없음	없음	없음	0.20%	-	0.03%	0.015%
C(F)	2013.03.29	투자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나.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따른 기금 다. 100억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없음	없음	없음	0.20%	0.05%	0.03%	0.015%
P1	2011.02.0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없음	없음	없음	0.20%	0.35%	0.03%	0.015%
P2	2014.06.03	투자자의 자격을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없음	없음	없음	0.20%	0.98%	0.03%	0.015%
Pe1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로 인터넷 판매를 통하여 가입한 자에 한함	없음	없음	없음	0.20%	0.17%	0.03%	0.015%
Pe2	-	투자자의 자격을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 인터넷 판매를 통하여 가입한 자에 한함	없음	없음	없음	0.20%	0.49%	0.03%	0.015%
S	2014.04.23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없음	3 년이내 환매금액의 0.15%이내	없음	0.20%	0.25%	0.03%	0.015%
S(P)1	미설정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없음	없음	없음	0.20%	0.21%	0.03%	0.015%

S(P)2	미설정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에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없음	없음	없음	0.20%	0.22%	0.03%	0.015%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위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매입시에 일회적으로 부과합니다.
주2) 후취판매수수료는 위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환매시에 일회적으로 부과합니다.
주3) 보수는 순자산총액의 연간 %를 기준으로 하며, 매3개월마다 지급합니다.
주4) 보수 외의 기타비용, 증권거래비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2부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 자투자신탁	우리G PIMCO토탈리턴증권모투자신탁[채권_재간접형]
우리G PIMCO토탈리턴증권자투자신탁 [채권_재간접형](H)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 투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집합투자기구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우리G PIMCO 토탈리턴 증권모투자신탁 [채권_재간접형]	주요투자대상 및 투자 전략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핌코펀즈: 글로벌인베스터즈시리즈 피엘씨(PIMCO Funds: Global Investors Series plc, 이하 " PIMCO Funds"라 함)에 속한 하위 펀드(하위 집합투자기구)인 " PIMCO GIS Total Return Bond Fund-INST Acc "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투자목적	해외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특히 주로 투자등급의 미국 국채, 회사채 및 모기지에 분산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
	투자위험	기준통화(USD)에 대하여 환헤지 전략을 수행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펀드명	PIMCO GIS Total Return Bond Fund-INST Acc
투자목적	토탈 리턴 본드 펀드는 다양한 종류의 채권에 대하여 분산투자와 위험관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 주로 미국 국채, 모기지 및 회사채 등에 투자하며 탄력적으로 지방채, 하이일드 및 미국 외 글로벌 채권에도 투자하여 수익률 향상을 추구
펀드 설정일 및 소재지	설정일:1998.01.31 설립국가: 아일랜드

펀드규모	미화 70억 달러(2016.02월 말 기준)
운용회사	PIMCO Global Advisors (Ireland) Limited
비교지수	Bloomberg Barclays U.S. Aggregate Index
펀드매니저	Scott A. Mather, Mark R. Kiesel, Mihir P. Worah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외국집합투자기구인 " **PIMCO GIS Total Return Bond Fund-INST Acc** "(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재간접형 모투자신탁에 90% 이상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재산의 대부분이 투자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인 " PIMCO GIS Total Return Bond Fund-INST Acc "는 미국 국채, 모기지, 회사채 등 투자등급 중기채에 주로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위험을 최소화하며서 총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운용전략을 수행합니다.

또한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의 특성에 알맞게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투자대상의 종류/ 투자한도/투자대상의 조건)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 내용
①모투자신탁수익증권	**90%이상**	**우리G PIMCO토탈리턴증권모투자신탁[채권_재간접형]**
②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양도성예금증서 및 환매조건부매수	**10%이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양도성 예금증서
		4.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③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를 둡니다.

①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투자대상 ①, ②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 ②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③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아래 자투자신탁의 투자제한 ② 내지 ④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 우리G PIMCO토탈리턴증권모투자신탁[채권_재간접형]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①집합투자증권	60%이상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②채권	40%이하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법 제71조제4호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③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④기업어음증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인 것,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어음"이라 한다)
⑤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법 제9조제14항의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

	10% 이하	물, 국채선물, 국채선물옵션, 통화선물 및 통화선물옵션
⑥장외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화 관련 장외파생상품(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⑦투자증권대여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⑧환매조건부 매도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⑨증권의 차입		①내지 ④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⑩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⑪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환매조건부 매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① ~ ④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적용예외기간을 15 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라.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 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1) 투자대상 중 ①부터 ④까지의 투자한도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2)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대상 ⑤부터 ⑨까지 및 아래의 모 투자신탁의 투자제한 ②부터 ⑤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아래의 모 투자신탁 투자제한 ⑥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①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 회사는 제외한다)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 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파생상품에의 투자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②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에 따른 위험회피거래를 제외한 명목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③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우리G PIMCO토탈리턴증권모투자신탁[채권_재간접형]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①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 회사는 제외한다)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 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마. 투자자의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염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	
②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계속)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자산총액의40%를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계속)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③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함	
④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⑤ 파생상품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에 따른 위험회피거래를 제외한 명목계약금액을 말한다)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⑥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취득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이 투자신탁은 외국집합투자기구인 " PIMCO GIS Total Return Bond Fund-INST Acc "(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재간접형 모투자신탁에 90% 이상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재산의 대부분이 투자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인 " PIMCO GIS Total Return Bond Fund-INST Acc "는 미국 국채, 모기지, 회사채 등 투자등급 중기채에 주로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위험을 최소화하며서 총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운용전략을 수행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한 비교지수는 Bloomberg Barclays U.S. Aggregate IndexX 95% + Call X 5% 입니다.

※ Bloomberg Barclays U.S. Aggregate Index 란?

Bloomberg Barclays U.S. Aggregate Index 는 Barclays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지수로써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과세 가능한 달러 표시 증권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미국의 투자등급 고정금리 채권시장을 대표하며 정부증권, 기업증권, 저당이체증권, 그리고 자산담보부증권으로 구성됩니다.

Bloomberg Barclays U.S. Aggregate Index 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지수로서 본 집합투자기구의 포트폴리오와 비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와 같은 복합 지수를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으며, Call수익률은 현금성 자산과의 비교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단,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원·달러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내·외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 변동 위험을 조절하는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의 환위험 관리 전략 부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대상 및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핌코펀즈: 글로벌인베스터즈시리즈 피엘씨(PIMCO Funds:

투자전략	Global Investors Series plc, 이하 " PIMCO Funds"라 함)에 속한 하위 펀드(하위 집합투자기구)인 " PIMCO GIS Total Return Bond Fund-INST Acc "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투자목적	해외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특히 주로 투자등급의 미국 국채, 회사채 및 모기지에 분산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
환위험 관리 전략	이 투자신탁내 외화자산(미국달러)에 대하여 95%~105%수준으로 환헤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이 헤지 수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상황 변동시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으로 환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환, 선물, 옵션, 스왑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외환시장의 혼란 발생시 대상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해 헤지 거래가 일시적으로 전액 또는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지 대상금액과 헤지수단의 거래단위의 차이로 인해일부 투자금액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외화자산 표시통화와 헤지통화(미국달러)간의 상이로 인해 투자대상국 환율변동에 따른 환헤지 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의 기본목적인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통화 선물 거래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의 회피를 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 등 외화 자산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수익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환헤지를 수행으로 환율 변동 위험을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환, 선물, 옵션, 스왑 등)을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수행함에 따른 환헤지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경우는 증거금 및 수수료 등의 비용 산출이 가능하나, 장외파생상품은 장외거래 특성상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계약환율 자체에 이미 비용이 반영되어 있어 비용만을 별도 분리하여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의 특성상 장내파생상품의 환헤지 비용만을 표시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PIMCO GIS Total Return Bond Fund-INST Acc)의 주요 운용 전략 및 위험 관리	[운용전략] 본 펀드는 다양한 만기를 가진 고정수익증서로 이루어진 분산화된 포트폴리오에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투자합니다. 본 펀드의 포트폴리오 평균 듀레이션은 통상 Barclays US Aggregate Index의 ±2년 이내 수준입니다. Bloomberg Barclays US Aggregate Index는 SEC에 등록된 미달러화 표시 과세 증권으로 구성됩니다. 이 지수는 정부증권, 기업증권, 저당이체증권(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 자산담보부증권으로 구성되며 투자등급의 미국 고정금리채권 시장을 대표합니다. 이 지수가 대표하는 주요 부문은 정기적으로 산정되고 보고되는 더 자세한 지수로 다시 분류됩니다. Bloomberg Barclays US Aggregate Index의 듀레이션에 관한 정보는 요청시 하위집합투자업자로부터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주로 투자등급의 고정수익증서에 투자하지만, 최소 신용등급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자산유동화증권을 제외하고 Moody's나 S&P의 B등급 이상 Moody's의 Baa등급 또는 S&P의 BBB등급 미만인 (또는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하위집합투자업자가 이에 상응하는 등급으로 평가한) 고정수익증서에 자산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미국 이외 발행인이 발행한 미달러화 표시 증권에 무제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미달러화 이외 통화로 표시된 고정수익증서와 미달러화 이외 통화 포지션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미달러화 이외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는 총자산의 20%까지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미달러화 이외 통화로 표시된 고정수익증서 및 미달러화 이외 통화에 발생한 변동이 펀드의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헷지 및 통화 포지션은 현물 및 선도환 계약, 통화선물, 통화옵션, 통화스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유럽공동체규정에 따라, 펀드는 선물, 옵션, 스왑 계약과 같은 파생상품(상장 및 장외 파생상품을 포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선도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생상품은 (i) 위험 회피 및/또는 (ii) 투자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펀드는 (i) 환위험을 회피하거나, (ii)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파생상품이 기초자산의 가치를 더 잘 반영할 것이라는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거나, (iii) 집합투자업자의 금리 전망에 맞게 본 펀드의 금리 익스포저를 조정하거나, 및/또는 (iv) 특정 지수의 구성이나 성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단, 본 펀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본 펀드가 직접 투자할 수 없는 증서, 발행인,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우회적으로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지수에 투자할 수 없음), 파생상품(펀드의 투자방침상 허용된 자산이나 업종을 기초로 한 것에 한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활용으로 인하여 (위험회피 혹은 투자목적인지 여부를 불문함) 펀드는 다양한 투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이 기초로 하는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단 지수에 기초한 파생상품은 제외함)(위험회피 혹은 투자목적인지 여부를 불문함)는 직접 투자로 인해 발생한 포지션과 합산하여 투자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의 활용으로 인하여 (위험회피 혹은 투자목적인지 여부를 불문함) 추가적인 레버리지

	효과(leveraged exposure)가 발생하는 경우에라도 그렇게 추가된 익스포저는 중앙은행의 요건에 따라 Value-at-Risk(VaR)를 통해 고려되고 관리됩니다. VaR 은 과거자료에 기초하여 99% 신뢰수준에서 펀드가 입을 수 있는 일일 최대손실을 예측하는 통계방식입니다. 그러나 일일 VaR 이 예상치를 초과할 수 있는 1%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펀드는 상대적 VaR 모델과 절대적 VaR 모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VaR 모델을 활용할 경우, 펀드의 포트폴리오 VaR 은 본 펀드의 투자유형을 반영한 유사한 참고지수 포트폴리오 또는 기준 포트폴리오(즉, 파생상품을 포함하지 않은 유사한 포트폴리오) VaR 의 2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VaR 모델을 활용할 경우, 펀드의 포트폴리오 VaR 은 본 펀드의 순자산가치의 20%를 넘지 않으며 보유기간은 20일입니다. 상기한 내용은 중앙은행이 요구하는 현재 VaR 한도입니다. 중앙은행이 이러한 한도를 변경할 경우, 펀드는 그러한 새로운 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과 관련된 모든 위험평가액은 최소 매일 단위로 측정되고 모니터됩니다.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을 위한 다양한 기법(발행조건부거래(when issued), 후일인도조건부거래(delayed delivery), 선도약정거래(forward commitment), 외화거래, 환매조건부/역환매조건부 매매거래 및 증권대여거래를 포함함)은 중앙은행이 수시로 부과하는 제한과 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펀드는 자산의 25% 이하를 지분증권으로 전환가능한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총 자산의 10% 이하를 지분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i) 주식증권으로 전환가능한 증권, (ii) 지분증권(워런트 포함), (iii) 예금증서, (iv) 은행인수어음으로 구성된 투자자산에 총 자산의 1/3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순자산액의 10%까지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주식이나 수익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는 단기금융상품에 해당하는 대출참가와 대출양도와 같은 비유동성 증권에 순자산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이머징시장 증권에 자산의 15%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위험관리] 투자전략은 전체적인 위험 수준에 따라 제한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절차에 통하여 개별 투자 전략과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평가합니다. 종합적이고 독자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주요 포트폴리오 위험요인들을 일단위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 상기의 전략은 시장 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위험관리

(1) 리스크관리의 원칙

- 펀드 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 리스크 요인별로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향을 설정
- 고객에 대한 선량한 자산관리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토록 함

(2) 리스크관리 정책

- 운용자산관련 투자 및 리스크 관리 규정 제정 및 운영
- 투자의사결정과 병행하여 펀드의 시장 / 신용 / 유동성 리스크를 측정
-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당사의 사무수탁회사인 우리펀드서비스 프로그램 내에 구축
-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리스크 관리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Daily Monitoring 및 Monthly Risk Reporting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60% 이상을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90% 이상을 투자하는 증권자투자신탁(재간접형)으로서, 모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한 집합투자증권 등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상품 가입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 미국의 경제 및 정치환경, 환율변동 등 해외 경제지표의 변화 및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 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미국 국채, 모기지, 회사채 등 투자등급 중기채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이는 선진 국가,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대상 국가의 위험에 크게 노출됩니다.
재간접투자위험	주요 투자대상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외국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PIMCO 펀즈: 글로벌 인베스터즈 시리즈 피엘씨(PIMCO Funds: Global Investors Series plc)에 속한 하위 펀드(하위 집합투자기구)인 " PIMCO GIS Total Return Bond Fund-INST Acc "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채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채권은 미래 이자율 변동에 따라 가격변동위험과 쿠폰의 재투자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의 상환만기를 가진 채권은 단기의 상환만기를 가진 채권에 비하여 시장금리변동에 따른 가치의 변동이 크게 나타납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신탁 대부분이 상환되는 시기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의 중도매도에 따른 자본손실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은 일정 매기마다 수령하는 이자액(Coupon)을 다시 재투자 했을 때의 수익률 변동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가격은 중간에 수령하는 이자액을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동일하게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채권시장 이자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으므로, 만약 지급 받은 이자액을 재투자하는 시점에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 투자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 해외채권, 어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상태 악화 등의 원인으로 신용도 하락, 채무 불이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원금과 이자에 대한 회수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투자신탁의 환매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미국 국채, 모기지, 회사채 등 투자등급 중기채에 분산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투자함으로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표시통화는 미국달러(USD)이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

	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내·외파생상품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표시통화인 미국달러에 대한 환헤지를 실행하며 목표환헤지 비율은 해외투자분 순자산가치(NAV)의 95%~105%수준으로 환헤지 하는 것을 목표하여 환율변동위험의 최소화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외환시장의혼란 발생시 대상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해 헤지거래가 일시적으로 전액 또는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지 대상금액과 헤지수단의 거래단위의 차이로 인해 일부 투자금액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PIMCO Funds의 하위펀드)가 투자하는 각 투자대상국 외화자산통화와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표시통화 간에 발생하는 환율 변동 위험이 존재합니다. 환헤지의 기본목적인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이 투자신탁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금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투자신탁의 적시 환매에 응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비용의 증가,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레버리지 위험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은 특성상 기초자산의 시장가격 변동보다 더 큰 손익을 가져오는 레버리지 효과(지렛대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크게 투자원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종류에 따라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장내파생상품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함)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특성으로 인한 레버리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파생상품의 가격 움직임이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옵션에 투자할 경우,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 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파생상품의 계약 만기 시 동 계약을 차근월물 등으로 이전(roll over)하여 파생상품 운용을 지속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차근월물 간의 가격차이 등으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 위험	이 투자신탁은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함)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는 장외파생상품에 속합니다. 장외시장거래는 개별적인 계약이므로 표준화된 장내시장과 달

	리 참여자들에게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호장치가 제공되지 않으며,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외거래의 거래상대방이 거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외시장은 장내시장에 비해 유동성이 적으므로 계약 청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매연기 등으로 인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증권 차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차입 자산을 공매도(short selling)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 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환매조건부 매도로 운용할 수 있으며, 환매조건부채권(RP)이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 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대출(콜론) 및 예금잔액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재산을 단기대출로 운용할 수 있으며, 단기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 등으로 인해 만기일에 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환매연기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자금 미상환에 따른 투자 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내의 현금 중 자산에 투자되지 않는 잔액은 신탁회사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로 인해 당해 예금 잔액은 물론 이자수령 등의 차질로 인해 수익자는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 자산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ABCP, ABSTB)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기초자산 발행사의 파산 및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유동화 증권의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대상 국가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성과는 미국 국채, 모기지, 회사채 등 투

위험	자등급 중기채에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결정되므로 투자하는 지역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또는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위험에 노출됩니다. 오직 한 국가에만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당해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어느 한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적어지는 대신에 많은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회 비용 및 수수료 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통화가치 하락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환헤지를 실행함에 따라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 발생 가능한 환차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로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집합투자증권 및 해외채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특정국가의 세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하여 투자신탁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해외계좌의무납세법(FATCA) 및 미국 납세의무자(US Taxpayers)	**미국 해외계좌의무납세법(FATCA)** 미국 해외계좌의무납세법(FATCA)은 미국 고용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the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HIRE))의 일환으로 미국 의회가 2010년에 제정한 법률입니다. FATCA는 미국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지역에 금융자산 및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 준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FATCA는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의 등록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 요구사항의 한 예를 보면, 펀드 내 특정유형의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FATC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발생된 이자 및 배당 등과 같은 특정유형의 지급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펀드 및 하위펀드가 FATCA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FATCA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는 특정 투자자의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하거나 공개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들에 대한 특정 지급금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는 또한 펀드의 단독 재량으로 투자자의 보유지분을 강제로 환매하거나 투자자가 보유한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투자자들은 펀드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펀드 및 하위펀드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이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IGA))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는 FATCA 필요조건들(펀드 및 하위펀드가 따라야 하는 국내 법령들의 수정, 개정, 면제 등 포함)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IGA가 체결되는 경우, 펀드 및 하위펀드는 해당 IGA의 적용을 받게 되며 관련

	법령도 적용받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FATCA 및 IGA로 인하여 그들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납세의무자(US Taxpayers)** "미국 납세의무자"라 함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미국 법률 또는 미국의 특정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미국에서 설립된 파트너쉽이나 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탁의 경우, 만약 (i) 미국의 어떤 법원이 적용가능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탁의 관리에 관한 모든 이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ii)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미국 납세자들이 신탁이나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인 사망자의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trust)도 미국납세자에 해당됩니다. 미국 납세자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미국 세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와 미국이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하에서는 미국 납세자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펀드의 지분은 어떠한 미국 납세자의 계좌에게도 청약이 권유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판매되어서도 안됩니다. 펀드가입 신청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그리고 그들이 미국 납세자를 대신하여 펀드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미국 납세자들에게 펀드의 지분을 매도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펀드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미국 납세자의 펀드 지분을 강제로 환매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2부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환매연기사유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추가청약연기 위험	운용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추가청약이 어려워질 경우에 모집(판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

위험	**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거나, 투자회사가 최저순자산액이 10억원 미달하고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순자산액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 산정 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상배당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에 대하여 배당락 기준으로 각 종목별 예상 배당액을 추정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합니다. 이 때 예상 배당금액은 추후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실제 배당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정된 실제 배당금액이 예상 배당금액 보다 적어질 경우 투자신탁의 가치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위험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 시키고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 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법에서 정한 오차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수익자, 기존 수익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국내 및 해외 관련 국가들의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용프로세스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

	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을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작성하는 투자설명서상의 투자위험등급 분류와 판매회사에서 분류하여 사용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특히 미국 국채, 우량 등급 회사채 및 미국 외 지역의 우량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채권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 자산의 높은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4.61%**으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5등급(낮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매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재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한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변경전・후 위험등급 및 변경사유

변경일	변경전 위험등급	변경후 위험등급	위험등급 변경사유

2016.07.02	4등급	5등급	-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 (5단계 → 6단계)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0.5%초과 5%이하

<우리글로벌자산운용 투자위험등급 기준>

1) 설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형 및 인버스형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소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비율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 설정된 후 3년 경과된 경우

등급	1(고위험)	2	3	4	5	6(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의 의미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란 투자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 투자신탁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 값이 클수록 미래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투자신탁의 위험이 커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설정 후3년이 경과한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의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합니다.

주1)투자위험등급분류는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의 자체기준으로 투자자의 위험성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2)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추후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고위험자산"이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고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주4)"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등급 이상), CP(A3 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 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중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주5)"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저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주6)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주7)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및 투자국가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8)위에 명시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사 자체 내부 위험등급 심의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상기의 위험분류 및 위험등급 범위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및 투자국가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회사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Class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Class A(E) (수수료선취-온라인형)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고,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Class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하지 않음
Class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를 통하여 가입한 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Class C(I)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고액1)	투자자의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부터 100억미만인 경우
Class C(I)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고액2)	투자자의 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Class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랩)	판매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금전신탁인 경우

Class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기관)	투자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나.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따른 기금 다. 100억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Class P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
Class 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
Class Pe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Class Pe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Class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Class S(P)1 (수수료후취-온라인 슈퍼-퇴직연금)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Class S(P)2 (수수료후취-온라인 슈퍼-개인연금)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회사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이며, 소득세법 제 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경우: **납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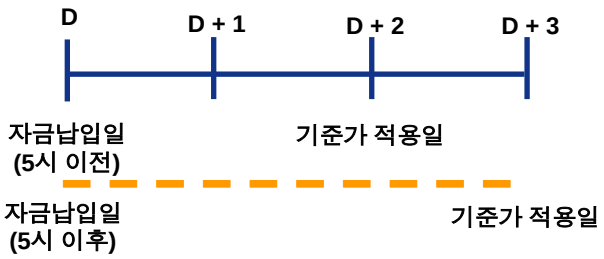

(다)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금전등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전등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국내에서 청약이 권유되거나 판매될 수 없습니다. 개정된 1933년 미국증권거래법에 따른 규정 S의 규칙 902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든 미국인의 계좌로 이전될 수도 없으며 또한 미국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전될 수도 없습니다. 가입신청자들은 가입신청자들 본인이 미국인이 아님을 선언할 것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신청자들은 미국인의 계좌를 위하여 가입하는 것이 아니며, 미국인의 계좌를 대리하여 가입하는 것도 아니며, 미국인들에게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취득하는 것도 아님을 선언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환매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환매가 가능한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관련 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D+5)**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D+9)**에 관련 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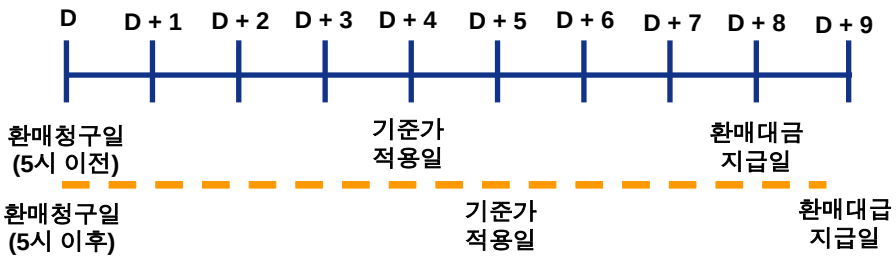

(다)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

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 중인 금전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의 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계좌로 환매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7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8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또는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부분환매를 결정하는 경우 환매연기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wooriglobalam.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인터넷 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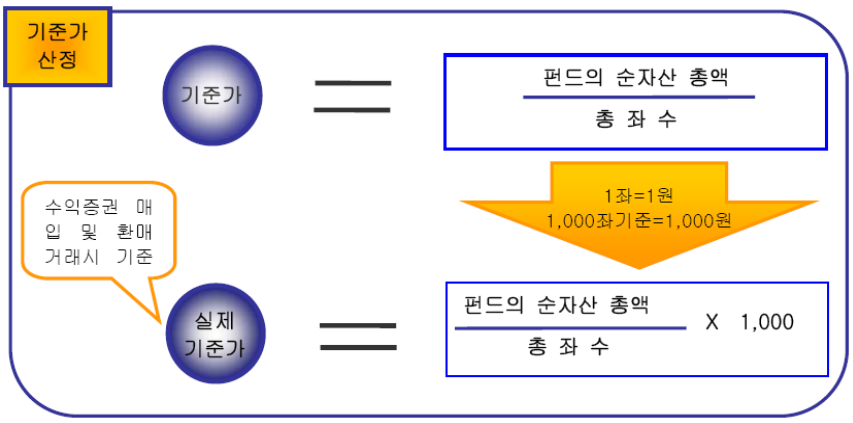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3)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 가 방 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평가방법(3개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3개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
비상장채권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의 상장채권 가운데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단,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주)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등 위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적용할 세부기준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정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Class A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7% 이내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환매수수료	-	환매시
Class A(E)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35% 이내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환매수수료	-	환매시
Class C 수익증권 Class C(E)수익증권 Class C(I)1수익증권 Class C(I)2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Class C(W)수익증권 Class C(F)수익증권 Class P1수익증권 Class P2수익증권 Class Pe1수익증권 Class Pe2수익증권 Class S(P)1수익증권 Class S(P)2수익증권	환매수수료	-	환매시
Class S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3년 이내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환매시
	환매수수료	-	환매시

주) 선취/후취판매수수료는 위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위 범위 내에서 선취/후취 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 연)									
구분	**A**	**A(E)**	**C**	**C(E)**	**C(I)1**	**C(I)2**	**C(W)**	**C(F)**	**지급 시기**
집합투자업자	0.200	0.200	0.200	0.200	0.200	0.200	0.200	0.200	매 3 개월
판매회사	0.600	0.300	1.000	0.800	0.400	0.200	-	0.050	
신탁업자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일반사무관리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보수합계	0.845	0.545	1.245	1.045	0.645	0.445	0.245	0.295	
기타비용	0.002	0.001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발생 시
총보수 ·비용	0.847	0.546	1.247	1.047	0.647	0.447	0.247	0.297	매 3 개월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펀드의 총보수·비용 (0.50%) 포함)	1.347	1.046	1.747	1.547	1.147	0.947	0.747	0.797	
증권거래비용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발생 시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 연)								
구분	**P1**	**P2**	**Pe1**	**Pe2**	**S**	**S(P)1**	**S(P)2**	**지급 시기**
집합투자업자	0.200	0.200	0.200	0.200	0.200	0.200	0.200	매 3 개월
판매회사	0.350	0.980	0.170	0.490	0.250	0.210	0.220	
신탁업자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일반사무관리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보수합계	0.595	1.225	0.415	0.735	0.495	0.455	0.465	
기타비용	0.002	0.002	0.002	0.000	0.000	0.000	0.000	발생 시
총보수 ·비용	0.597	1.227	0.417	0.735	0.495	0.455	0.465	매 3 개월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펀드의 총보수·비용 (0.50%) 포함)	1.097	1.727	0.917	1.235	0.995	-	-	
증권거래비용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발생 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2019.06.22~2020.06.21)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설정 펀드의 경우, Class C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PIMCO Funds GIS Total Return Bond Fund)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약 **연0.50%**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2019.06.22~2020.06.21)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설정 펀드의 경우, Class C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주6) 이 투자신탁은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비용(기타비용에 포함)이 발생하며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비용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이 경우 해외보관대리인의 비용은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해외보관대리인 간의 합의된 기일과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주7)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1,000원)

투자기간	가입 시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Class A 수익증권	70	204	344	492	809	1,752
Class A(E)수익증권	35	139	249	364	611	1,346
Class C 수익증권	-	175	358	551	965	2,197
Class C(E)수익증권	-	155	317	488	855	1,946
Class C(I)1수익증권	-	115	235	362	634	1,443
Class C(I)2수익증권	-	95	194	299	523	1,191
Class C(W)수익증권	-	75	153	235	413	940
Class C(F)수익증권	-	80	163	251	440	1,002
Class P1수익증권	-	110	225	346	606	1,380
Class P2수익증권	-	173	354	544	954	2,172
Class Pe1수익증권	-	92	188	289	507	1,153
Class Pe2수익증권	-	124	253	389	682	1,553
Class S 수익증권	-	100	204	314	550	1,252

주1)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종류Class A와 Class C에 각가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8년, Class Ae와 Class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이 약 1.5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NAV)변동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6년 04월 11일 이후 매년 결산. 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 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 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①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새로운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상환금등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 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소득 과세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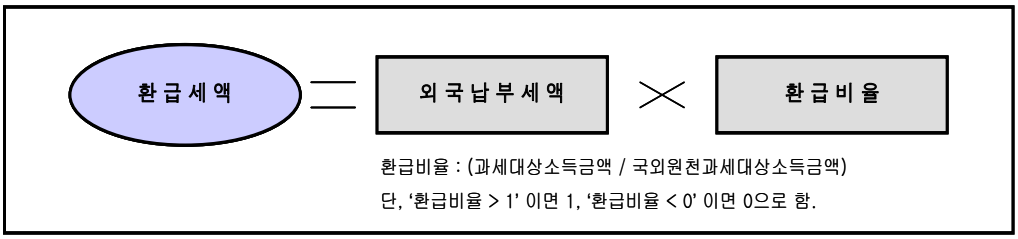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담하지 아니 하지만 투자신탁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 및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은 제외)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시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세법의 변경 및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감사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제8기(2017.06.22 - 2018.06.21)	면제
제9기(2018.06.22 - 2019.06.21)	적정
제10기(2019.06.22 - 2020.06.21)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항 목	제 10 기	제9기	제8기
	2020.06.21	2019.06.21	2018.06.21
운용자산	97,526,579,803	32,834,653,377	3,223,484,668
유가증권	97,518,735,286	32,828,924,144	3,216,492,04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7,844,517	5,729,233	6,992,627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873,019,742	110,371,608	41,692,454
자산총계	98,399,599,545	32,945,024,985	3,265,177,122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719,642,869	76,363,226	34,828,479
부채총계	719,642,869	76,363,226	34,828,479
원본	82,175,603,479	29,586,314,039	3,071,501,442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조정금	15,504,353,197	3,282,347,720	158,847,201
자본총계	97,679,956,676	32,868,661,759	3,230,348,643
운용수익	5,185,398,853	822,553,295	-112,568,087
이자수익	116,653	80,212	86,174
배당수익	53,151,372	23,300,324	1,623,711
매매평가차손익	5,132,130,828	799,172,759	-114,277,972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1,650,000	1,650,000	0

관련회사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650,000	1,650,000	0
당기순이익	5,183,748,853	820,903,295	-112,568,087

나. 대차대조표 **(단위:원)**

항 목		제 10 기	제9기	제8기
		2020.06.21	2019.06.21	2018.06.21
운용자산		97,526,579,803	32,834,653,377	3,223,484,668
현금및예치금		7,844,517	5,729,233	6,992,627
현금및현금성자산		7,844,517	5,729,233	6,992,627
유가증권		97,518,735,286	32,828,924,144	3,216,492,041
수익증권		97,518,735,286	32,828,924,144	3,216,492,041
기타자산		873,019,742	110,371,608	41,692,454
매도유가증권미수금		819,867,323	87,066,720	40,064,131
미수이자		1,047	4,564	4,612
미수배당금		53,151,372	23,300,324	1,623,711
자 산 총 계		98,399,599,545	32,945,024,985	3,265,177,122
기타부채		719,642,869	76,363,226	34,828,479
해지미지급금		666,583,552	52,465,208	33,145,542
수수료미지급금		1,650,000	1,650,000	0
미지급이익분배금		51,409,317	22,248,018	1,682,937
부 채 총 계		719,642,869	76,363,226	34,828,479
원 본		82,175,603,479	29,586,314,039	3,071,501,442
이익잉여금		15,504,353,197	3,282,347,720	158,847,201
자 본 총 계		97,679,956,676	32,868,661,759	3,230,348,643
부채 및 자본 총계		98,399,599,545	32,945,024,985	3,265,177,122
총좌수	운용	82,175,603,479	29,586,314,039	3,071,501,442
	A	11,350,244,482	4,316,911,655	1,540,016,228
	C	25,899,315,807	10,588,649,992	663,641,879
	C(E)	5,451,411,919	1,222,095,343	343,420,066
	C(W)	3,424,439,086	2,556,327,689	354,292,645
	P1	8,032,312,913	2,905,090,242	108,218,766
	S	265,524,672	16,129,215	12,740,967
	P2	4,429,068,224	858,151,856	115,052,404
	Pe1	26,846,941,468	8,273,473,819	11,031,581
	Pe2	501,712,834	82,903,319	1,216,919
	A(E)	969,566,026	261,888,218	0
기준가격	운용	1188.67	1110.94	1051.72
	A	1142.32	1076.17	1026.73
	C	1119.65	1059.10	1014.48
	C(E)	1130.93	1067.61	1020.59

	C(W)	1163.51	1089.56	1033.32
	P1	1156.73	1087.04	1034.52
	C(S)	1162.64	1091.42	1037.64
	P2	1120.86	1060.03	1015.15
	Pe1	1089.99	1022.46	971.31
	Pe2	1085.69	1021.69	973.69
	A(E)	1114.26	1046.57	0.00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항 목		제 10 기	제9기	제8기
		2019.06.22 ~ 2020.06.21	2018.06.22 ~ 2019.06.21	2017.06.22 ~ 2018.06.21
운용수익(운용손실)		5,185,398,853	822,553,295	-112,568,087
투자수익		53,268,025	23,380,536	1,709,885
이자수익		116,653	80,212	86,174
배당금수익		53,151,372	23,300,324	1,623,711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5,193,338,623	801,235,268	4,360,864
지분증권매매차익		1,683,481,750	34,617,564	4,360,864
채무증권평가차익		3,509,856,873	766,617,704	0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61,207,795	2,062,509	118,638,836
지분증권매매차손		61,207,795	2,062,509	41,000,268
채무증권평가차손		0	0	77,638,568
운용비용		1,650,000	1,650,000	0
기타운용비용		1,650,000	1,650,000	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운용	5,183,748,853	820,903,295	-112,568,087
	A	718,944,103	133,338,794	-52,337,977
	C	1,499,116,627	260,793,341	-26,438,359
	C(E)	224,556,654	46,318,606	-11,581,053
	C(W)	377,520,274	68,575,352	-49,429,478
	P1	433,235,450	60,208,390	-3,293,252
	C(S)	630,338	593,766	-391,807
	P2	143,842,334	19,610,378	-3,820,121
	Pe1	1,074,057,177	162,125,240	-70,685
	Pe2	13,245,736	1,719,524	-27,315
	A(E)	33,049,084	6,289,078	0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운용	75.39	126.01	-24.83
	A	51.01	74.00	-31.40
	C	62.90	124.51	-36.13
	C(E)	51.66	74.12	-30.00
	C(W)	73.03	122.34	-30.43
	P1	69.16	146.96	-34.74
	C(S)	9.10	63.83	-40.24

	P2	63.66	85.43	-34.90
	Pe1	70.05	161.45	-22.99
	Pe2	52.65	129.24	-44.08
	A(E)	44.67	61.52	0.00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백만원, 백만좌)**

종류 (Class)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금액	설정좌수	설정금액	환매좌수	환매금액	좌수	금액
A	2017/06/22~2018/06/21	1,693	1,789	621	657	775	812	1,540	1,581
	2018/06/22~2019/06/21	1,540	1,581	4,095	4,310	1,318	1,379	4,317	4,646
	2019/06/22~2020/06/21	4,317	4,646	31,039	34,172	24,006	26,571	11,350	12,966
C	2017/06/22~2018/06/21	734	769	317	335	387	404	664	673
	2018/06/22~2019/06/21	664	673	10,234	10,600	309	319	10,589	11,214
	2019/06/22~2020/06/21	10,589	11,21	36,679	39,414	21,368	23,129	25,899	28,998
C(E)	2017/06/22~2018/06/21	370	389	248	259	274	287	343	350
	2018/06/22~2019/06/21	343	350	1,257	1,302	379	394	1,222	1,305
	2019/06/22~2020/06/21	1,222	1,305	11,246	12,316	7,017	7,680	5,451	6,165
P1	2017/06/22~2018/06/21	67	71	59	63	17	18	108	112
	2018/06/22~2019/06/21	108	112	2,811	3,000	14	15	2,905	3,158
	2019/06/22~2020/06/21	2,905	3,158	8,398	9,341	3,271	3,641	8,032	9,291
P2	2017/06/22~2018/06/21	78	82	53	55	16	17	115	117
	2018/06/22~2019/06/21	115	117	783	813	39	40	858	910
	2019/06/22~2020/06/21	858	910	4,775	5,215	1,204	1,304	4,429	4,964
S	2017/06/22~2018/06/21	2	3	13	14	3	3	13	13
	2018/06/22~2019/06/21	13	13	38	40	34	37	16	18
	2019/06/22~2020/06/21	16	18	399	457	150	166	266	309
C(W)	2017/06/22~2018/06/21	2,169	2,292	2,347	2,498	4,162	4,374	354	366
	2018/06/22~2019/06/21	354	366	2,359	2,518	157	167	2,556	2,785
	2019/06/22~2020/06/21	2,556	2,785	12,199	13,612	11,331	12,791	3,424	3,984
Pe1	2017/08/18~2018/06/21	0	0	11	11	0	0	11	11
	2018/06/22~2019/06/21	11	11	9,108	9,136	845	850	8,273	8,459
	2019/06/22~2020/06/21	8,273	8,459	38,222	40,318	19,648	20,589	26,847	29,263
Pe2	2017/07/26~2018/06/21	0	0	1	1	0	0	1	1
	2018/06/22~2019/06/21	1	1	86	86	4	4	83	85
	2019/06/22~2020/06/21	83	85	817	862	398	415	502	545
A(E)	2019/01/22~2019/06/21	0	0	275	281	13	13	262	274

	2019/06/22~2020/06/21	262	274	2,586	2,782	1,878	2,009	970	1,080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이후
		2019/06/22 ~ 2020/06/21	2018/06/22 ~ 2020/06/21	2017/06/22 ~ 2020/06/21	2015/06/22 ~ 2020/06/21	(%)
운용	2010-06-22	7.03	6.37	3.52	3.57	4.13
비교지수	2010-06-22	8.24	8.04	4.88	4.06	3.77
변동성(%)	2010-06-22	7.29	5.38	4.61	3.91	3.50
Class A	2010-06-29	6.13	5.47	2.65	2.69	3.27
비교지수	2010-06-29	8.24	8.04	4.88	4.06	3.77
변동성(%)	2010-06-29	7.30	5.38	4.61	3.92	3.50
Class C	2010-06-22	5.70	5.05	2.23	2.28	2.85
비교지수	2010-06-22	8.24	8.04	4.88	4.06	3.77
변동성(%)	2010-06-22	7.30	5.39	4.62	3.92	3.50
Class C(E)	2010-07-15	5.91	5.26	2.44	2.49	3.07
비교지수	2010-07-15	8.24	8.04	4.88	4.06	3.75
변동성(%)	2010-07-15	7.30	5.38	4.62	3.92	3.51
Class C(W)	2010-07-09	6.77	6.10	3.26		1.52
비교지수	2010-07-09	8.24	8.04	4.88		1.88
변동성(%)	2010-07-09	7.30	5.38	4.61	4.11	3.77
Class P1	2011-02-09	6.39	5.73	2.90	2.95	3.53
비교지수	2011-02-09	8.24	8.04	4.88	4.06	3.93
변동성(%)	2011-02-09	7.30	5.38	4.61	3.92	3.48
Class S	2014-04-23	6.51	5.84	3.01	3.06	3.02
비교지수	2014-04-23	8.24	8.04	4.88	4.06	3.90
변동성(%)	2014-04-23	7.30	5.38	4.61	3.92	3.72
Class P2	2014-06-03	5.72	5.07	2.26	2.31	2.02
비교지수	2014-06-03	8.24	8.04	4.88	4.06	3.71

변동성(%)	2014-06-03	7.30	5.39	4.62	3.92	3.74
Class Pe1	2017-08-18	6.59	5.92			3.07
비교지수	2017-08-18	8.24	8.04			5.05
변동성(%)	2017-08-18	7.30	5.38			4.69
Class Pe2	2017-07-26	6.25	5.59			2.87
비교지수	2017-07-26	8.24	8.04			5.03
변동성(%)	2017-07-26	7.30	5.38			4.66
Class A(E)	2019-01-22	6.45				7.94
비교지수	2019-01-22	8.24				10.01
변동성(%)	2019-01-22	7.30				6.19

주1) 비교지수: Bloomberg Barclays U.S. Aggregate Index X 95% + Call X 5% 입니다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4)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5)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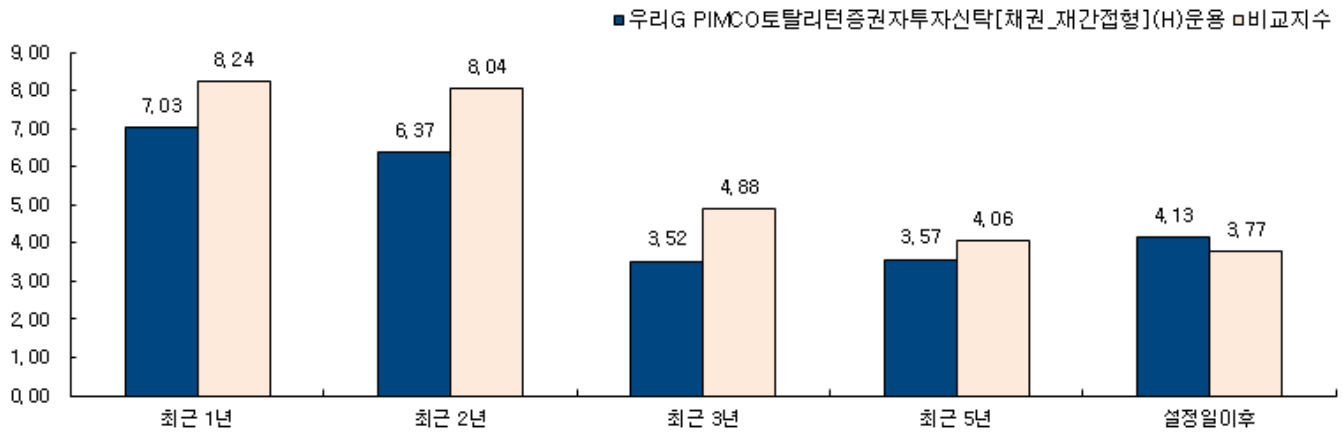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2019/06/22 ~ 2020/06/21	2018/06/22 ~ 2019/06/21	2017/06/22 ~ 2018/06/21	2016/06/22 ~ 2017/06/21	2015/06/22 ~ 2016/06/21
운용	2010-06-22	7.05	5.70	-1.96	2.92	4.37
비교지수	2010-06-22	8.27	7.83	-1.16	1.08	4.62
Class A	2010-06-29	6.15	4.82	-2.79	2.05	3.49
비교지수	2010-06-29	8.27	7.83	-1.16	1.08	4.62

Class C	2010-06-22	5.72	4.40	-3.18	1.65	3.08
비교지수	2010-06-22	8.27	7.83	-1.16	1.08	4.62
Class C(E)	2010-07-15	5.93	4.61	-2.98	1.85	3.29
비교지수	2010-07-15	8.27	7.83	-1.16	1.08	4.62
Class C(W)	2010-07-09	6.79	5.44	-2.20	2.67	
비교지수	2010-07-09	8.27	7.83	-1.16	1.08	
Class P1	2011-02-09	6.41	5.08	-2.54	2.31	3.75
비교지수	2011-02-09	8.27	7.83	-1.16	1.08	4.62
Class S	2014-04-23	6.53	5.18	-2.44	2.41	3.86
비교지수	2014-04-23	8.27	7.83	-1.16	1.08	4.62
Class P2	2014-06-03	5.74	4.42	-3.16	1.67	3.10
비교지수	2014-06-03	8.27	7.83	-1.16	1.08	4.62
Class Pe1	2017-08-18	6.60	5.27	-3.40		
비교지수	2017-08-18	8.27	7.83	-1.70		
Class Pe2	2017-07-26	6.26	4.93	-2.90		
비교지수	2017-07-26	8.27	7.83	-1.32		
Class A(E)	2019-01-22	6.47				
비교지수	2019-01-22	8.27				

주1) 비교지수: Bloomberg Barclays U.S. Aggregate Index X 95% + Call X 5% 입니다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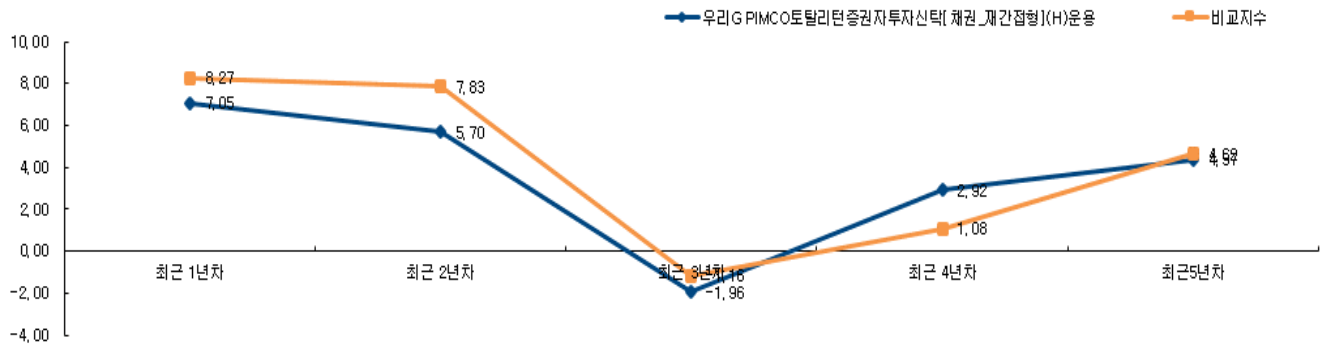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운용 펀드> **(2020.06.21 기준, 단위: 백만원, %)**

통화별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및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부동산	실물자산	기타			
대한민국	0	0	0	97,519	0	0	0	0	0	8	873	98,400
비중	0.00	0.00	0.00	99.10	0.00	0.00	0.00	0.00	0.00	0.01	0.89	100.00

자산합계	0	0	0	97,519	0	0	0	0	0	8	873	98,400
자산비중	0.00	0.00	0.00	99.10	0.00	0.00	0.00	0.00	0.00	0.01	0.89	100.00

주1)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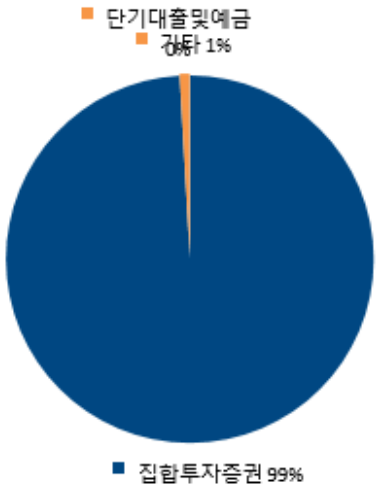

우리G PIMCO 토탈리턴 증권 모투자신탁[채권_재간접형] **(2020.06.21 기준 / 단위 :백만원, %)**

통화별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부동산	실물자산	기타			
미국	0	0	0	91,344	0	1,075	0	0	0	0	0	92,419
비중	0.00	0.00	0.00	98.84	0.00	1.16	0.00	0.00	0.00	0.00	0.00	90.58
대한민국	0	0	0	0	0	0	0	0	0	7,191	2,419	9,611
비중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74.83	25.17	9.42
자산합계	0	0	0	91,344	0	1,075	0	0	0	7,191	2,419	102,03
자산비중	0.00	0.00	0.00	89.53	0.00	1.05	0.00	0.00	0.00	7.05	2.37	100.00

주1)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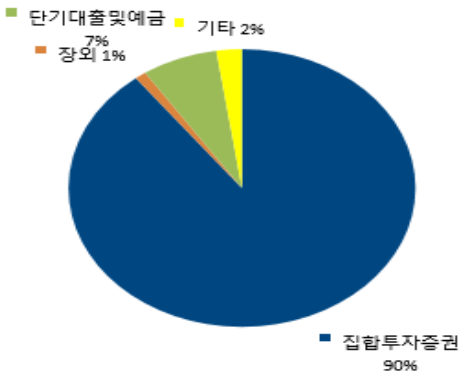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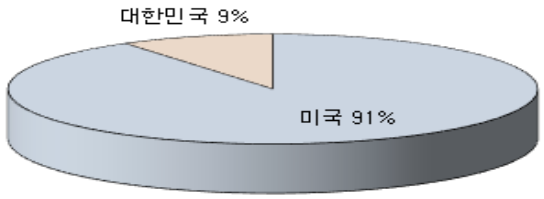

* 피투자펀드인 " PIMCO Funds GIS: Total Return Bond Fund "는 미국 통화(USD)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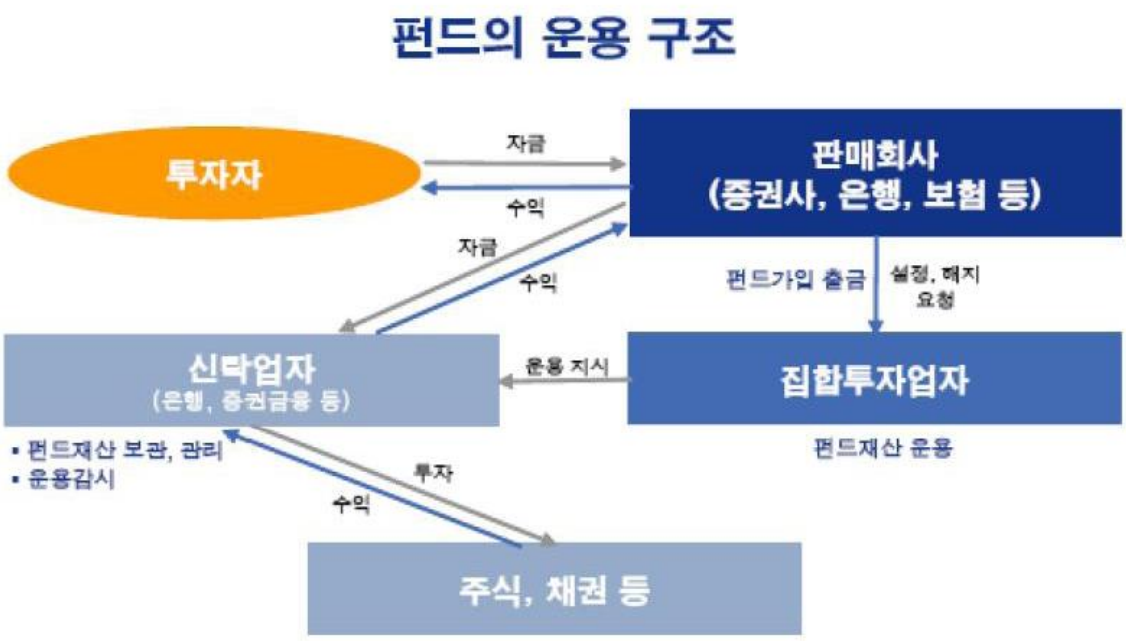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ABL 타워 02-2071-9900
회사연혁	2000.12 하나알리안츠투자신탁운용㈜ 설립 2001. 1 투자신탁운용업 본허가 취득 2001. 3 영업 개시 2005. 8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사명변경 2017. 12. 에이비엘글로벌자산운용㈜ 사명 변경 2019. 12.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사명 변경
자본금	200억
주요주주현황	우리금융지주 100%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의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동 투자신탁에서 부담합니다.

(2) 선관의무 등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행한 제비용 및 보수를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④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책임

①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①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법령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이를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업무의 위탁(기준가격계산 업무위탁)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우리펀드서비스㈜**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억원)**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19.12.31	2018.12.31	계정과목	2019.12.31	2018.12.31
현금 및 예치금	237	264	영업수익	64	99
매도가능금융자산	0	0	영업비용	107	99
대여금 및 수취채권	0	0	**영업이익**	**-43**	**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7	17			
종속기업투자	20	20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21	23			
유형자산	19	3	영업외수익	2	3
무형자산	2	3	영업외비용	2	0
기타자산	20	12			

자산총계	**326**	**343**			
기타부채	15	14			
기타금융부채	16	0			
부채총계	**31**	**14**			
자본금	200	200	**법인세차감전이익**	**-42**	**3**
이익잉여금	95	129	법인세비용	-9	0.7
자본총계	**295**	**329**	**당기순이익**	**-33**	**2**

라. 운용자산 규모 **(2020.07.03 현재 / 단위: 억원)**

구분	증권				MMF	파생형	부동산	특별자산	투자일임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재간접						
수탁고	2,114	63	8,751	7,278	2,846	1,413	585	3,119	43,733	69,902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회 사 명	HSBC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 TEL) 02-1588-1770 www.hsbc.co.kr
회사연혁등	회사연혁 1982. 부산지점 설립 1984. 서울지점 설립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②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③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④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⑤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수익금, 임대료 등의 수령
⑥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⑦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⑧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⑨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의무와 책임

1) 의무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 ·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 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 결과

2)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우리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60길 17 (연락처: 02-3151-3500) 홈페이지 www.woorifs.co.kr
회사연혁등	2000.08. ㈜리젠코리아 인수 영업개시(신탁사업본부) 2000.11. 신탁사업본부 산하 증권수탁팀으로 흡수 2004.0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이해상충행위 방지규정으로 업무지원본부 총무부로 조직개편 2007.02. 우리CS자산운용㈜의 업무대리인 계약 2007.12. 조직개편으로 기업영업전략부로 소속 변경 2009.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탁사업단으로 소속변경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②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③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④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2) 의무 및 책임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KIS 채권평가	NICE 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 층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 길 28 한국화재보험협회 4 층 ☎ 02-3215-14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 길 19 대하빌딩 4 층 ☎ 02-398-39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태화빌딩 4 층 ☎ 02-721-53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설립일 : 2000. 5. 29 -등록일 : 2000. 7. 1 -자본금 : 50 억원 (www.koreaap.com)	-설립일 : 2000. 6. 20 -등록일 : 2000. 6. 30 -자본금 : 30 억원 (www.bond.co.kr)	-설립일 : 2000. 6. 15 -등록일 : 2000. 6. 15 -자본금 : 47.5 억원 (www.npricing.co.kr)	-설립일 : 2011. 6. 9 -등록일 : 2011. 9. 23 -자본금 : 50 억원 (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②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③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는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소집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외의 부분에 따른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지급일의 연장, 법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 225 조 2 제 1 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 제 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 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 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신탁의 합병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③ 다만, '②'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하려는 각각의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시행령 제223조 제3항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④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2. 법 제19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집합투자규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①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관련하여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 제8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법 제88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매회전율) 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이상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 230 조 제 3 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③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라. 해지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을 말한다)부터 해당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5.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6. 투자신탁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 개월, 6 개월, 9 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7. 투자신탁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8. 투자신탁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9. 투자신탁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10.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 개 종목
11. 투자신탁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 개월, 6 개월, 9 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2.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 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③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 조 에서 정한 사유가 및 법 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⑥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등은 제외)

⑦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⑨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wooriglobalam.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 법 시행령 제 93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에 따라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에 따라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①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③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①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 87 조 제 7 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②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이해관계인의 범위]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이상 판매·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내용
투자증권거래	1) 선정시 고려사항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2)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특정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이 제공될 수 없는 방법] ①회사 경영관련 비용 ②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③마케팅비용 ④운용전문인력은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주) 매매대가 이익: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용어의 정리

용어 (가나다순)	내 용
개방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은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은 공고일 전일의 펀드순자산총액을 그 공고일 전일의 펀드 수익증권 총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가격으로 계산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MMF)	펀드재산의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펀드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이나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예상이 빗나갈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형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환율가격을 현재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하며,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성과보수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사전에 투자설명서와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말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법령 및 신탁계약상의 중요사항을 변경 할 때 펀드의 모든 투자자들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신탁계약에 따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말합니다.
투자신탁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즉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통상 연 %로 표시되며, 투자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펀드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신탁업자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주식형투자신탁	펀드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라 하며,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	통상 펀드라고 말하며, 대표적으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집합투자업자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	펀드에 대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을 말합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이미 설정된 펀드에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중도환매를 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해지	펀드의 신탁계약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등 투자대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펀드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펀드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중도환매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펀드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할 때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로서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다시 펀드재산에 편입됩니다.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다시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는 대부분 달러 등 외국 통화로 주식 등을 사기 때문에 도중에 환

	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는 선물환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